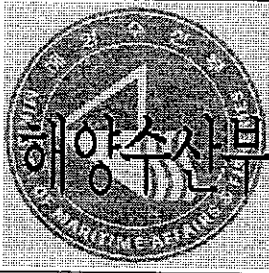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김태기
Tel 02-3148-6931, pico567@momaf.go.kr

- 2004. 1. 14. 배포
- 총 3쪽(붙임 포함)

2004년도 총허용어획량 제도 실시

9개어종 7개업종에 총 21만7천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04년도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1만7000톤으로 결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2003년보다 1만4000톤 감축된 것으로 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등 9개어종이며, 업종은 선망, 통발 등 7개업종에 대해 시행한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오징어, 갈치 및 멸치에 대해 예비어종으로 선정하여 장차 TAC 대상 어종 선정에 대비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9년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붉은대게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2001년 개조개, 키조개 및 제주도 소라, 2002년 대게, 2003년 꽃게를 추가하여 현재 9개 어종에 대하여 TAC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TAC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하게 되며, 어업인의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선별로 배분량할당증명서를 교부한다.

배분된 할당량은 조업실적이 있을 때마다 각 항구의 위판장을 경유하여 시·도를 통해 어업인의 어획량이 관리되고 있으며, 위판장에는 옵서버 12명(7개 지역)이 고정·배치되어 확인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1일부터는 TAC 관리대상 12개어종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어선 소재지 인근 항구의 위판장 93개소에서 판매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어획 자료는 TAC 실시를 위한 자원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어업인이 초기에 경영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수산발전기금 150억원을 어업 규모에 따라 3%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TAC 제도의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TAC를 할당받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초과 어획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해양부는 그 동안 TAC 제도를 실시한 결과 대외적으로는 어업협상에서 우리측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실시 어업인의 소득 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자원관리면에서 TAC 제도 실시 이후 고등어 및 전갱이의 개체크기가 증가하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TAC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으로 정확한 어업자원량 평가가 어려운점, 업종별 높은 혼획율, 읍서버 인원 부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TAC 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통해 제품 가격의 안정화로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TAC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어업인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붙임)

〈 2004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할당 현황〉

구 분	시 · 도별	TAC량(톤)	어선수	어업별	비고
총계	9개	217,650	494척 28통, 100개 어촌	7개	
고등어	부산시	155,000	28통	대형선망	
전갱이		10,000			
정어리		5,000			
붉은 대게	소계	21,000	49척	근해통발	
	강원도	8,500	25척		
	경북도	12,500	24척		
대게	소계	1,000	53척	근해 자망 · 통발	
	경북도	850	43		
	울산시	150	10		
개조개	소계	8,000	181척	잠수기	
	부산시	300	7척		
	전남도	2,500	52척		
	경남도	5,200	122척		
키조개	충남도	2,500	37척	잠수기	
제주소라	제주도	2,150	100개 어촌계	마을어업	
꽃게	소계	13,000	174척	연 · 근해 자망 · 통발	
	인천시	12,500	157척		
	충남도	500	17척		

□ 어종별 금어기 현황

○ 대게 : 5개월간(6.1~10.31)

○ 꽃게 : 2개월간(7.1~8.31)

○ 키조개 : 2개월간(7.1~8.31)

○ 제주도소라 : 3개월간(7.1~9.30)